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 및 정책현안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응으로 행정신뢰도 향상

○ 소득세 독립세 전환, 안전조직 강화, CCTV관제, 기초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

○ 업무기능 증가 및 기능 이관에 따라 부서 및 담당 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

3. 주요내용

가. 총　괄 : 2실, 11과, 1단, 2직속, 2사업소, 1읍 9면, 1의회
⇒ 1실, 12과, 1단, 2직속, 2사업소, 1읍 9면, 1의회

나. 과 명칭변경(5)

○ 주민복지실 ⇒ 주민복지과

○ 문화체육과 ⇒ 문화관광과

○ 새마을청소년과 ⇒ 새마을체육과

○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⇒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
기술보급과 ⇒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

다. 담당업무 조정

○ 기획감사실 시책개발담당
시책개발 업무 ⇒ 기획담당
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업무 ⇒ 예산담당
농산어촌개발 업무 ⇒ 안전건설과 농촌개발담당

○ 총무과 총무담당 민방위업무 ⇒ 안전관리담당
교육지원담당 업무 ⇒ 교육후생담당
후생복지담당 업무 ⇒ 교육후생담당

○ 재무과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업무 징수
⇒ 통합징수담당
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⇒ 읍·면(※사무위임조례 개정)

○ 주민복지실 주거급여업무 ⇒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

○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 업무 중 합창단 업무
⇒ 문화예술회관 기획운영담당
체육진흥담당 업무 전반 ⇒ 새마을체육과 체육진흥담당
○ 새마을청소년과 여성아동담당 업무 전반
⇒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
청소년담당 업무 전반 ⇒ 주민복지과 청소년담당

○ 환경보호과 환경미화담당 클린성주 만들기 업무 전반
⇒ 클린성주담당
수계관리담당 자연형생태하천 가동보 관리 업무
⇒ 안전건설과 하천방재담당
○ 농정과 농지관리담당 업무 전반
⇒ 농정과 농정담당
○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측량 및 지형·지리정보 업무
⇒ 민원봉사과 지리정보담당
도시개발담당 참외테마광장 관리 업무
⇒ 농업기술센터 참외소득담당
도시개발담당 장기미집행(미불)용지 도시계획 시설관리
⇒ 도시계획담당
○ 산림과 산림경영담당 가로수관리 업무
⇒ 산림보호담당
○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인적재난관리 업무
⇒ 총무과 안전관리담당
안전건설담당 자연재난 업무 전반
⇒ 안전건설과 하천방재담당
○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업경영 업무
⇒ 농촌지원과 지도교육담당
기술보급과 소득작목, 참외기술담당 업무 전반
⇒ 연구개발과 참외소득담당
귀농귀촌 업무전반 ⇒ 귀농귀촌팀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 및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(3) 입법예고 : 2014. 11. 27. ~ 2014. 12. 6

(4) 성별영향평가 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주요 핵심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현안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소수직렬의 인사교류를 통해 사기진작과 업무 기능이관에 따라 부서 및 담당명칭 변경으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며, 부서간 정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

❍ 주요내용은

2실 11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읍 9면 1의회 116담당을

1실 12과 1단 2직속 2사업소 1읍 9면 1의회 115담당으로

❍ 과 명칭 변경은

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, 새마을청소년과를 새마을체육과로,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를 농촌지원과로, 기술보급과를 연구개발과로, 과 명칭 변경은 5개과, 담당폐지 5담당, 담당신설은 4담당, 담당명칭변경은 13담당, 부서간 담당이동은 5담당이 되겠습니다.

❍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의 현실화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실·과 명칭변경과 담당업무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대내외적으로 사회적·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, 지역 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입법예고 등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, 안전조직 강화,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 수행과 CCTV 관제 등 지역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 : 561명 ⇒ 567명(증6)

○ 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(증2)

○ CCTV 관제업무(증1) 및 안전조직 강화(증1)

○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(증2)

※ 안전행정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반영

○ 집행기관의 정원 : 549명 ⇒ 556명(증7)

○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⇒ 11명(감1)

나. 종류별 정원책정기준(별표 1) : 변동 없음

다.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별표 2) : 변동 없음

라. 직급별 정원(별표 3)

○ 일반직 : 528명 ⇒ 535명(증7)

○ 별정직 : 1명(변동 없음)

○ 연구직 : 3명 ⇒ 5명(증2) ※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 강화

○ 지도직 : 28명 ⇒ 25명(감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(직급별 정원) 및 같은 규정 제30조(정원의 규정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(2014년 총액인건비 반영)

○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: 309,840천원

○ 일반직 : 62,460천원 × 4명 = 249,840천원

○ 복지직 : 30,000천원 × 2명 = 60,000천원

※ 인건비 판단기준 : 2014년 총액인건비 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(3) 입법예고 : 2014. 11. 27. ~ 2014. 12. 6

(4) 성별영향평가 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 대상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세제개편, 안전 조직 강화,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과 농업기술센터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조직에 효율성을 기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

❍ 주요내용은

정원의 총수는 561명에서 567명으로 6명이 증가되겠으며,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이 549명에서 556명으로 7명이 증되며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이 되겠습니다.

❍ 직급별 정원을 살펴 보면

일반직이 528명에서 535명으로 7명 증이 되겠으며, 별정직은 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, 연구직이 3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증 되겠으며, 지도직은 28명에서 25명으로 3명이 감이 되겠습니다.

❍ 이와 같이 직급조정 및 직렬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(직급별정원) 및 같은 규정 제30조(정원규정)에 의거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이행하였으며, 직원의 의견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등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「지방공무원법」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단위사무명 변경 등 관련조문 정비

○ 지방 세외수입 징수법 시행(2014. 8. 7)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읍·면에 일부사무 위임

3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령 개정(안 제1조)

○지방자치법 제95조 ⇒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

나. 위임대상 정비(안 제2조)

○ “읍면장” ⇒ “읍·면장 및 의회사무과장”

다. 위임사무(권한위임) 정비 및 신설(안 제2조 별표)

○ 의회사무과장 위임 사무(임용권에 관한 사항) 중 단위사무명 정비 및 신설(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)

- “6급상당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” ⇒ “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“
- “전문직 공무원” ⇒ “임기제 공무원”
- 전문경력관,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,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사항 신설

○지방세법에 관한 사항 중 읍·면 위임사무 신설

-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업무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○ 지방자치법 제104조(사무의 위임등) 및 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

○ 지방재정법 제62조(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)

○ 지방공무원법 제2조(공무원의 구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(3) 입법예고 : 생 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)

(4) 성별영향평가 :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

5. 검토의견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용하고 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단위사무명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

❍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91조와 지방재정법 제62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직무에 대한 책임감과 현실화 및 행정 조직의 변화에 맞춰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